

周邊環境與件

# 韓·日·中·蘇 領土紛爭의 現況

보 관 용

(관 리 과) 5/5

國土統一院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 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 韓·日·中·蘇 領土紛爭의 現況

—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North East Asian Countries —

研究執筆責任 金 燦 奎



(略歷)

서울法大 業卒 (1955)

同 大學院 修了 (1957)

Institute of Social Studies in Hague

(국제 관계 전공 1966)

現 慶熙大 法大學長

刊行責任 金 泳 植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차 례

一. 緒 論 .....	8
二. 日・中間의 領土紛争 .....	14
三. <del>日</del> 中・蘇간의 領土紛争 .....	24
四. 韓・日간의 領土紛争 .....	34
五. 日・蘇간의 領土紛争 .....	44

## 要 約

金 燦 奎

本 論文은 韓國을 包含한 周辺諸国간의 領土紛爭의 現況을 高찰하여 상호간의 利害關係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파헤침으로써 外交政策의 樹立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취급한 범위는 獨島를 둘러싼 韓·日간의 문제, 尖閣列島를 圍繞한 日·中間의 紛爭, 中·蘇간의 國境紛爭 그리고 하보마이(齒舞)·시꼬탄(色丹)·에포로후(択捉)·구나시리(國後)의 4개 島嶼에 대한 領有權을 중심한 日·蘇간의 紛爭이다. 南支那海에 있는 「파라셀」·「스프라틀리」群島를 둘러싼 中·越·比간의 紛爭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本 論文에서 취급한 領土紛爭中 中·蘇간의 國境紛爭을 除外하면 모두 일정한 공통성을 가진다. 첫째, 그것은 領土紛爭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영토라면 그것이 有人島이든 無人島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든 아니든 또는 크든 작든 영토라는 사실 자체로서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特徵이다. 옛날에는 領土売買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1867年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720万弗에 미국에 売却한 것, 1899年 스페인이 Caroline Islands를 2,500万 pesetas에 독일에 판 것, 1916年 덴마크가 西印度諸島의 St.Thomas, St.John, St.Croix 등 섬을 2,500万弗을 받고

미국에 売渡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인데 이러한 영토들이 現時点에서 갖는 막중한 가치를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영토를 버릴 수는 없다는 역사적 敎訓을 발견하게 된다.

과거 식민지로서의 經驗을 가졌던 국가들은 영토에 대해 특히 예민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先進強大國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긴 뼈아픈 사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일쑤이며 외국에 대해 寸土도 양보할 수 없다는 민족적 감정이 있다. 따라서 영토문제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어떤 政權이 그것을 양보했다면 그 政權은 지탱될 수 없음은 물론 主役人物은 영원히 売國奴로서 罵倒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領土紛爭이 지니는 첫째 特徵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韓·日간의 獨島問題, 日·蘇간의 北方 4개 島嶼를 둘러싼 紛爭 그리고 日·中 간의 尖閣列島에 대한 領有權 紛爭은 그것이 天然資源과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 섬의 주변에는 모두 풍부한 魚族資源이 棲息하고 있다. 東海 한북판의 大和堆에는 寒流와 暖流가 맞부딪쳐 環流를 일으키기 때문에 海底에 沈澱된 無機物 등이 浮上하여 많은 먹이를 찾아든 풍부한 魚族資源이 群棲하는데 獨島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이 해역의 魚族資源에 대한 권리가 달라진다.

사정은 일본이 北方 4개 島嶼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동일하다.

1976년 12월 10일 소련이 「沿岸接統水域에 있어서의 生物資源

의 保存과 漁業規制에 대한 暫定措置에 관한 소련 邦最高會議 幹部 會令」을 공포하고 1977년 3월 1일부터 이를 실시했을 때 소련 은 당해 4개 島嶼를 自國領이라는 전제하에서 200해리에 대한 劃 線을 했다. 그리하여 오오스크海의 광대한 漁場이 소련의 漁業專 管水域에 편입됨으로써 일본 어선들이 이 곳으로부터 배제되어 생 선을 常食하는 일본에게는 많은 피해가 돌아왔다. 이 때 이러한 소련의 조치에 격분한 일본에서는 2次大戰後 처음 보는 국민총화 가 이루어졌다. 尖閣列島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다음 광물자원의 경우는 어떠한가?

제 3차 UN해양법회의의 현단계에서 그 成敗를 가름할 수 있는 최대 문제 중의 하나가 深海底開發을 둘러싼 것임은 주지의 사실 인데 이것은 그 開發方式에 따라 국가 간의利害가 달라지기 때 문이다. 深海底에는 망강團塊라고 불리는 다량의 광물자원이 堆 積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 하와이에서 멕시코를 잇 는 中間 海底地域이라고 하며 東海에는 獨島 주변 해저에도 망강 團塊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륙붕에는 석유와 天然개스가 있다. 1966년 ECAFE의 후원하에서 조직되었던 CCOP (아시아近海区域 鈹物資源共同探查調 整委員會)는 美海軍의 지원을 얻어 1968年 10월 및 11월에 걸친 6주 동안 黃海와 東支那海일대에 대한 광범한 海底探查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석유 및 天然개스 賦存可能性이 제일 큰 곳은 台灣의 동북부이며 둘째로 큰 곳은 한국쪽에 하나 그리

고 중공 쪽에 두개의 서로 연결된 세계의 海底盆地를 가진 黃海의 海底임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台灣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에는 세계 굴지의 석유 매장량이 있을 가능성이 짙다는 사실 등도 밝혀졌다. 尖閣列島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세째로, 東北亞의 領土紛爭은 戰略的인 면에서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獨島에서 찾는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올라디보스토끄에 基地를 둔 소련의 極東艦隊가 印度洋艦隊와 연결하려 하거나 중공 근해에서 作戰하려 할 때 外洋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타타르·宗谷·津輕·大韓의 4개 海狹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 중 앞의 3개는 氣象條件·거리·시간 등으로 극히 불편하여 소련으로서는 大韓海狹을 이용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大韓海狹을 통과하면 곧 東支那海로 나가 台灣外側을 돌고 南支那海를 지나서 말라카海狹만 통과하면 자기들의 印度洋艦隊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항로를 염두에 둘 때 소련함대는 獨島 주변을 지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獨島는 소련 함대의 운항을 制動할 수 있는 戰略的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獨島는, 大西洋에서 地中海로 또는 地中海에서 大西洋으로 이동하는 海軍力을 制動할 수 있는 지브랄타르에 비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련이 캄차카半島의 페트로파블로브스끄를 강화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데 있다.

이것은 獨島 뿐만 아니라 日本의 이른바 地方 4개島嶼의 경우도 동일하고 또한 尖閣列島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모

두 소련 함대가 展開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北方 4개島嶼는 그간을 소련이 계속 장악하면 일본에 대한 한 없는 壓力이 된다. 尖閣列島는 이러한 戰略的 重要성을 갖는 외에 그것이 石油輸送路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中·蘇 國境紛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것은 共產圈 내부의 主導權 다툼이나 理念紛爭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이다. 中·蘇 國境紛爭은 淸朝와 帝政 러시아 정부 때 이미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帝政 러시아가 武力으로써 淸朝에 강요한 이른바 강제된 조약에 의해 빚어진 帝國主義的 팽창정책의 결과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兩當事國 사이에는 역사적·민족적·인종적 반목이 있다.

中·蘇 國境紛爭은 이와 같이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珍寶島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7,500 km에 이르는 中·蘇 국경에는 근대적 장비를 한 소련 陸上兵力의 25%, 소련 空軍의 25%, 戰略核部隊의 30%가 배치되어 있으며 18,000 km의 중공 해안선으로부터는 소련 海軍의 25%가 壓力을 가하고 있다. 소련은 중공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공의 周邊諸國에도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라오스를 중공에서 분리함으로써 間接的 위협을 증대하고 있으며 尙今 뚜렷한 결실을 보지는 못하고 있으나 ASEAN諸國과



極東諸國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 日·中, 美·中 간의 접근이라고  
풀이된다. 中·소 간에는 1950년 中·소 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은 中·소 간의 友好協力을 강화하고 「일본 帝  
國主義의 부활 및 일본국의 침략 또는 침략행위에 대해 어떤 형  
태로든지 일본국과 연합하는 나라의 침략의 반복을 공동으로 방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前文).

이 조약은 30년간 유효하며 締約국이 有効期間 滿了 1年前에  
타방 당사국에 대해 조약 廢棄의 희망을 통고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5년간씩 계속 効力을 갖게 되어 있다(제6조). 이 조약  
은 1950년 2월 14일에 조인되어 동년 4월 11일에 發効했으므로  
1979년 4월 11일까지 어느 일반이 廢棄通告를 하지 않으면  
1985년 4월 11일까지는 무조건 유효하게 된다.

그런데 중공은 1972년 9월 일본과 國交回復을 했고 1978년  
8월 12일 日中平和友好條約에 조인함과 동시에 일본을 敵對視하는  
상기 中·소 조약에 대해서는 1979년 4월 11일까지 소련에 대해  
廢棄通告를 함으로써 그것을 破棄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確約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1980년 4월 11일에  
그 効力이 終了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공은 일본에 대해 1978년 4월에 있었던 것과  
같은 尖閣列島 문제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確約한 바 있다.

日·中 平和友好條約에 중공은 이른바 反覆權條項을 挿入시킴으로

써 소련을 견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중공은 다시 1979年 1月1日 미국과의 修交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아 올 때 한국을 중실한 東北亞에 있어서의 모든 영토분쟁은 상호 密接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특히 獨島문제와 尖閣列島문제는 그 類型에 있어 비슷하다. 양자가 모두 역사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는 일방의 해결이 다른 일방의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일본의 北方 4개 島嶼 문제는 戰後處理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中·소 분쟁과도 密接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北方 4개 島嶼는 2次大戰後 소련이 힘으로써 점령한 것으로 아직도 반환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만은 中·소 분쟁이 계속되는 渦中에서 일본이 중공과 接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一. 緒 論

지금 東北亞 各國 사이에는 영토분쟁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獨島問題, 일본과 소련 사이의 이른바 北方 4개島嶼問題, 일본과 중공 간의 尖閣列島문제 그리고 소련과 중공 간의 국경분쟁 문제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獨島문제와 尖閣列島 문제 간에는 많은 점에 있어 類似性을 갖는데 그들이 모두 영토분쟁이라는 면을 가짐과 동시에 海洋資源과 戰略的 重要性을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금 우리는 분쟁이 없다는 입장을 堅持하나 일본 측에서는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獨島 문제를 보면 그것은 우선 영토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늘날 영토는 쓸모가 있는 것이건 없는 것이건 그것이 영토라는 점에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특히 과거 植民地로서의 經驗을 갖고 있는 나라에선 타국에게 寸土도 양보할 수 없다는 民族主義的 感情이 있다. 獨島문제는 바로 이러한 민족감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處理如何에 따라서는 국내적으로 것잡을 수 없는 混亂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정은 일본 측으로 보아도 다를 바 없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의 주장을 默殺하고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만 선전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誤導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 국민의 99% 이상이 獨島를 일본의 固有領土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韓國史에 通曉한 神奈川大學의 「가지무라 히메끼」(梶村秀樹)교수가 일본에서 발행되는 月刊誌「朝鮮研究」 9월호(통권 182호)에서 지적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獨島問題는 韓日 양국에 대해 큰 難題가 되어 버렸다고 그는 慨嘆한다.

다음 獨島문제는 海洋資源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오늘날 망강 團塊는 하와이와 멕시코를 잇는 太平洋의 深海底에 제일 많이 堆積되어 있다는 것인데 東海에서는 獨島 부근의 深海底에 堆積되어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따라서 獨島를 영유하는 국가는 망강 團塊의 개발에 있어 필연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다. 물론 현재의 趨勢로 보아 망강 團塊 등 深海底에 산재하는 천연자원은 人類의 共同相續物로 看做되어 어느 일국이 独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개발과정에서 隣接國이 유형 무형으로 유리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獨島 주변에는 또한 魚族資源이 풍부하다. 韓半島 주변에는 옛 부터 풍부한 魚族資源이 棲息하고 있었다. 이것은 寒流와 暖流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韓半島 주변에는 寒流에 사는 물고기도 많고 暖流에 사는 생선도 많다. 특히 東海 한북판의 大和堆에는 寒暖流가 맞부딪쳐 環流를 일으키기 때문에 海底에 沈澱된 無機物 등이 浮上하여 많은 먹이를 찾아 모여 든 풍부한 魚族資源이 群棲하기도 한다. 이 곳이 獨島에서 과히 멀지 않으므로 獨島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大和堆에 대한 권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끝으로 獨島는 戰略的인 면에서 극히 중요하다. 그것은 올라디 보스토끄에 基地를 둔 소련의 極東艦隊가 大韓海峽을 거쳐 東支那海로 나가기 위해서는 獨島 近海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獨島에 만약 missile基地 등 要塞를 건설한다면 그것은 大西洋과 地中海를 연결하는 길목을 잡고 있는 지브달타르에 버금가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소련에는 「무르만스끄」에 基地를 둔 北氷洋艦隊, 「올라디 보스토끄」에 基地를 둔 太平洋艦隊, 「크론슈타트」에 基地를 둔 발틱艦隊, 「세바스토폴」에 基地를 둔 黑海艦隊 그리고 영국이 수에즈 以東에 철수한 후 창설된 印度洋艦隊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遠距離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離合集散이 자유롭지 않다.

소련 해군의 불리한 조건은 艦隊의 集中을 위한 距離上的 陸路 이외에 그 交通로가 순탄치 못하다는 데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무르만스끄」는 광활한 北氷洋에 면하고 있으며 大西洋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출입이 자유로와 특히 潛水艦 基地로서는 最適의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그것은 北緯 68도 59분의 北極圈內에 위치함으로써 酷寒에 시달리고 大西洋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짙은 안개와 거센 물결로써 유명한 노르웨이 北端의 「노오스 케이프」(北岬)를 經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惡條件下에 있다.

「레닌그라드」의 外港에 해당하는 소련 최대의 軍港「크론슈타트」도 발틱海 깊숙한 곳에 있다. 거기서 大西洋으로 나가기 위해

내  
3

서는 먼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극히 좁은 두개의 海峽中 하나를 거쳐 「카데가트 채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곳에서 다시 120도를 꺾어 「스카게라끄 채널」을 지나서야 겨우 영국의 内海와도 같은 北海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이 航路는 핀란드, 스웨덴, 西獨, 덴마크, 노르웨이의 연안을 끼고 돌아야 하고 특히 헬싱키와 코펜하겐의 港灣水域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艦隊移動은 즉각 외국에 탐지되고 만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지금 北歐의 主要 都市는 거개가 간첩활동의 活舞台로 되어 있어 近海를 통과하는 함대가 정보원들의 측각에 걸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黑海艦隊의 基地인 「세바스토폴」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다. 「세바스토폴」에서 地中海로 나오기 위해서는 河川으로서도 과히 넓은 편이 아닌 「보스포러스」海峽을 거쳐 호수와 같은 「마르마라」海를 지나 다시 좁고도 긴 「다다넬스」海峽을 통하여 一名 多島海라고도 하는 「에에게」海로 나와 여기에서 다시 600킬로미터나 南下하여야 한다.

끝으로 太平洋艦隊의 基地인 「울라디보스토끄」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우는 좀 평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함대가 태평양 및 東支那海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 「울라디보스토끄」에서 태평양 및 東支那海로 나가기 위해서는 4개의 통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베리아와 樺太 사이의 「타타르」海峽, 樺太와 北海道 사이의 宗谷海峽,

서는 먼저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극히 좁은 두개의 海峽中 하나를 거쳐 「카테가트 채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곳에서 다시 120도를 꺾어 「스카게라끄 채널」을 지나서야 겨우 영국의 内海와도 같은 北海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이 航路는 핀란드, 스웨덴, 西獨, 덴마크, 노르웨이의 연안을 끼고 돌아야 하고 특히 헬싱키와 코펜하겐의 港灣水域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艦隊移動은 즉각 외국에 탐지되고 만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지금 北歐의 主要 都市는 거개가 간첩활동의 活舞台로 되어 있어 近海를 통과하는 함대가 정보원들의 측각에 걸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黑海艦隊의 基地인 「세바스토폴」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다. 「세바스토폴」에서 地中海로 나오기 위해서는 河川으로서도 과히 넓은 편이 아닌 「보스포러스」海峽을 거쳐 호수와 같은 「마르마라」海를 지나 다시 좁고도 긴 「다다넬스」海峽을 통하여 一名 多島海라고도 하는 「에에게」海로 나와 여기에서 다시 600킬로미터나 南下하여야 한다.

끝으로 太平洋艦隊의 基地인 「울라디보스토끄」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우는 좀 평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함대가 태평양 및 東支那海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 「울라디보스토끄」에서 태평양 및 東支那海로 나가기 위해서는 4개의 통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베리아와 樺太 사이의 「타타르」海峽, 樺太와 北海道 사이의 宗谷海峽,

北海道와 일본 本州 사이의 津輕海峡 그리고 한국과 對馬島 사이의 大韓海峡이 그것이다.

이 중 소련으로서 가장 편한 海路는 「타타르」海峡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데는 酷寒과 불순한 氣象條件 이외에 大迂廻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난점이 따른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비면에 있어 큰 희생이 부수된다. 宗谷海峡과 津輕海峡은 태평양으로 나가는데 捷徑이기는 하나 해협이 좁아 군함의 秘密通過가 불가능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한, 연안국인 일본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른바 非核3原則을 政策基調로 하고 있기 때문에 核推進 艦船의 통과는 허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宗谷海峡의 幅은 20해리, 津輕海峡의 幅은 9.6해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련으로서 大韓海峡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大韓海峡을 통과하면 태평양으로도 나갈 수 있고 東支那海, 南支那海를 지나 말라카海峡을 거쳐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印度洋艦隊와 합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大韓海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獨島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獨島는 大西洋과 地中海를 연결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지브랄타르에 못질바 없는 戰略的 重要性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소는 尖閣列島와 北方 4개島嶼들도 아울러 갖고 있다. 그래서 當事國은 자기들의 權利主張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데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서 對韓·對中·



對蘇 關係에서 영토분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본 으로서는 어느 것도 소홀히 다룰 수 없으며 정치적 妥結도 경솔 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이 韓半島를 중심한 東北亞에 있어서의 영토분쟁은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영토분쟁 자체에 대한 인식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각국의 이해 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本研究 의 의의는 실로 이러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 二. 日·中 간의 領土紛爭

日·中 간의 영토분쟁이란 尖閣列島の 領有權을 둘러싼 양국간의 분쟁이다.

尖閣列島는 台灣의 北東部에서 190 km, 중국 본토에서는 350 km 그리고 沖繩에서는 480 km의 거리에 있는 無人島와 珊瑚礁로써 구성된 다섯개의 섬을 일컬으며 중국 측에서는 釣魚台列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섬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나 그 戰略的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至大한 바 먼저 戰略的 가치로서는 소련 太平洋艦隊의 運轉을 制動할 수 있는 要衝地임과 동시에 페르시아→印度洋→말라카海峽→南支那海→日本列島로 이어지는 일본 석유수송로의 詰目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이 페르시아灣으로부터 상기 經路를 거쳐 도입하는 原油는 총수입량의 73%나 된다. 미국이 페르시아灣에서 들여 오는 양은 총수입의 27%에 불과하며 그중 77%는 인도양이 아니라 希望峰을 돌아 미국 東海岸으로 直接 가져 간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나라의 領有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原油 供給源을 中東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똑같은 사정을 안고 있는 까닭이다.

다음 尖閣列島는 경제적 가치도 至大하다. 1970년 유엔極東經濟委員會(ECAFE)가 실시한 海底探査의 결과 밝혀진 바에 의하

면 그 일대의 海底에는 풍부한 석유와 天然개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東北亞에서 가장 유망한 油田地帶임과 동시에 그 매장량은 페르시아灣 一帶와 맞먹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自由中國은 1970년 7월 미국 石油会社 걸프 오일의 子会社인 퍼시픽 걸프에 이 해역의 石油探査權을 준 바 있다. 이어 중공은 1971년 12월 同列島가 自國領이라고 주장했다. 거기에는 또한 고등어, 전갱이등 魚族資源이 풍부한 좋은 漁場이기도 하다.

이러한 尖閣列島의 領有權 문제를 둘러 싸고 日·中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1970년 7월 自由中國이 그 一帶의 海底石油 探査權을 미국 회사에 주고 또한 1971년 12월 중공이 同列島가 自國領이라고 주장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1971년 미국의 沖繩返還때 미국은 同列島까지 包含해서 일본에게 施政權을 넘겨 주었는데 문제가 복잡해지자 미국 上院外交委員會는 이 문제에 관해 중립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일본·중공·자유중국·미국이 관련되고 석유문제 때문에 필리핀까지도 넘겨다 보는 처지가 됨으로써 東北亞에 있어서의 중요한 영토분쟁으로 화했던 것이다.

1972년 9월 日·中共 간에 外交關係樹立原則이 결정되었을 때 중공은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으나 결국 무기한 보류하기로 양국 間に 합의를 보아 그후 잠잠하다가 1978년 4월 이 列島 주변에서 일본과 중공 間に 一大事故가 발생했다.

1978년 4월 12일 일본 海上保安庁에 들어 온 보고에 의하면 이날 오전 7시반경 尖閣列島 부근에서 操業中이던 중공 漁船

100여隻 중 16隻이 일본의 영해에 들어와 漁撈 중인 것을 일본 海上保安庁의 巡視船이 발견하고 퇴거를 명했으나 중공 어선들은 「이 곳은 중공의 영해이며 따라서 항해 및 操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계속 조업을 하다가 밤 8시경에야 퇴거했으며 이어 30분 뒤 14隻의 어선이 다시 들어와 조업을 하다가 물러 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4월 14일 「도노와끼 미쓰로오」 駐中共 自國 公使를 통해 중공 外交部 亞州局 副局長 王曉雲에게 항의각서를 전달했는데 王曉雲은 尖閣列島가 중공 영토라고 주장한 1971년 12월의 중공 外交部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회답했다.

이 때 自由中國 外交部 代辦人도 「釣魚台列嶼는 自由中國 영토의 不可分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자유중국의 主權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때 보인 소련과 蒙古의 태도는 흥미롭다. 그들은 모두 중공을 비난하고 일본을 지지했었다. 특히 4월 14일 소련은 대규모 중공 어선단이 東支那海의 일본 지배도시인 尖閣列島 주변에 출현한 것은 1956년 이래 중공이 소련·버마·인도·베트남·몽고 그리고 黃海 및 支那海 沿岸島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추구해 온 팽창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난하고 尖閣列島는 일본 영토라고 단언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78년 8월 12일 日中平和友好條約이 체결됨으로써 다시 小康狀態로 들어 갔다. 중공 측이 尖閣列島 문제에

대해 지난 4월에 있었던 것과 같은 사건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확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컨대 일본으로서는 이에 대한 분쟁해결 없이 중공과 平和友好條約을 체결한다면 北方 4개島嶼에 관한 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보류하고 日·蘇 友好條約을 체결하자는 소련의 제의를 거부하기는 힘들게 될 것이다.

尖閣列島の 영유권에 대한 日·中 간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측의 주장을 보면 그들은 明治 28年 1月 14日 閣議 決定에 의해 그것을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들 섬에 대한 연고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① 明治 12년 일본 内務省 地理局에 의해 공식적으로 작성된 지도에는 尖閣列島の 섬들이 冲繩縣의 行政管轄 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② 明治 17년경부터 日人 古賀辰四郎이 이들 섬에 사람을 파견하여 羽毛 및 해산물을 채집시킨 일이 있으며 ③ 明治 18년에는 冲繩縣令이 尖閣列島の 管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곳에 國標를 세우고자 한다는 건의가 太政大臣에게 上申된 바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上申은 明治 23년 및 26년에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冲繩縣令의 上申에 대해 일본 정부는 尖閣列島가 大東島諸島 등과 달리 淸國의 국경에 가깝고 또한 당시 淸國 신문에도 尖閣列島에 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國標의 설치는 적당한 기회로 연기하도록 하고 다만 冲繩縣令의 또 하나의 건의인 大坂商船의 出雲丸에 의한 同列島の 实地調査만을 허가하는데

그쳤다 한다. 그리고는 明治 28년 1월 14일 閣議決定에 의해 그것을 정식으로 領土編入했다는 것이다. (1)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이들 섬에 대한 發見·命名이 모두 중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중국은 이들 섬에 대한 領有의 의사도 있었고 또한 實効的 지배도 했다고 주장한다. 台灣의 국제법 학자인 丘宏達과 陶龍生 등은 「順風相送」 및 「日本一鑑」등 중국의 古文書를 근거로 이들 섬에 대한 發見·命名이 모두 중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또한 西太後(慈禧太後)가 釣魚台 등을 盛宣懷에 下賜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중국에게는 이들 섬에 대한 領有의 의사도 있었고 實効的 지배도 했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에서 우리는 尖閣列島の 영유권에 대한 日·中 간의 주장을 보았는데 일본 측의 주장은 同列島는 無主地였으므로 明治 28년 1월 14일 閣議決定에 의해 先占했다는 것이고 중국 측의 주장은 同列島는 無主地가 아니라 본래부터 中國領이었다는 것이다. 同列島가 無主地였던가 어떤가는 역사적 사실에 속하는 것이므로 양측이 援用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겠으나 일본측이 無主地였다는 근거로 同列島에 대한 중국의 지배가 實効的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一般國際法上 無主地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나 先占함으로써 領有權을 取得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無主地(terra nullius)라고 함은 반드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그 地域은 無主地로 간주되고 있다. (3) 그리고 先占(occupatio)이라고 함은 領有하고자 하는 主觀的 의사(animus)를 가지고 無主地를 客觀的으로 領有하는 사실(corpus)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先占이란 일반적으로 同地域에 대한 植民과 領有에 관한 공식적인 意思表示, 예를 들면 선언 또는 국기계양과 같은 것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형식적인 占有儀式 즉 상징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per se) 주장된 지역에 대해 즉시 主權을 確立하기 위해 또는 正當한 權原을 確立하기 위해 충분한 것이라고 간주되었으며, 예를 들면 <實効的 占有>와 같은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보충할 필요는 없었다. 이와 같이 取得되고 確立된 權利 또는 權原은, 정복이나 조약에 의해 양도되거나 철회·포기되거나 또는 어떤 다른 국가의 계속적인 占領에 의한 성공적인 반대에 직면하지 않는 한, 뒤이은 모든 반대주장에 대해 유효한 것이라고 간주되었다」(4)

그런데 18세기에 이르러 학자들이 先占은 <實効的인>(effective)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세기에 들어 와서 그것이 국가 간의 慣行으로 結晶되자 그 후 부터는 先占은 實効的인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 경우 完効的 先占이라고 함은 先占國家가 先占된 지역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權力行使를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無主地를 先占했다면 그 국가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동 지역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權

力行使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지 않는 한 동 지역은 先占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에서 實効的 先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先占된 지역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權力行使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權力行使가 <實効的> 先占을 구성하는가는 그 성질상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팔마스島 사건에 대한 裁定에서 仲裁裁判官 막스·후우버는 다음과 같이 判示한 바 있다.

「領土主權의 표현이 시간적 장소적 조건에 따라 相異한 형태를 지닌다는 것은 사실이다. 원칙적으로는 계속적인 것일지라도 主權은 사실상 영토의 모든 지점에 순간 순간 마다 행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권리의 유지와 양립할 수 있는 斷絶은 관계 지역이 사람이 사는 곳인가 살지 않는 곳인가에 따라, 主權이 명백히 표현되는 영토 내에 포위되는 지역인가 또는 예를 들면 公海로부터 서만 接近할 수 있는 지역인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진다」<sup>(5)</sup>

동일한 취지는 다른 國際判例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東部그린랜드 事件에서 常設國際司法裁判所는 덴마크가 東部그린랜드에 대한 領有權 주장을 옛부터 해 왔다는 사실과 그 섬에 대해서는 「타국에 의한 여하한 主權主張도 없었고 北極圈이며 동 지방의 植民되지 않은 부분의 接近할 수 있는 성격」에 비추어 植民된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섬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主權을 인정한다고 判示한 바 있다.<sup>(6)</sup> 그리고 클리퍼턴 事件에 대한



裁定을 맡은 이탈리아王 Victor Emmanuel III도 다음과 같이 判示한 바 있다.

法的 効力을 가진 太古的 부터의 慣行에 의해, 占有意思 (animus occupandi) 이외에 各目的이 아닌 실제적인 占有가 先占의 必須條件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占有는 先占國이 문제의 지역을 그 占有下에 두고 그 지역에 대해 排他的 權限을 행사하는 조치를 취하는, 특정한 행위나 일련의 행위로써 성립한다. 엄격하게 말해서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占有는 국가가 동 지역에서 스스로 그 法令이 尊重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確立할 때에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올바르게 말 한다면 占有에 대한 하나의 절차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占有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법에 따른 것이 불필요한 경우도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지역이 만일 全然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서 先占國이 동 지역에 등장하는 첫 순간부터 그 국가의 絶대적이고 다룰 수 없는 處分下에 놓인다면 그 순간부터 同占有는 성취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써 先占은 完成된 것이다. (7)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람이 全然 살고 있지 않고 또한 살 수도 없는 尖閣列島에 어느 정도의 主權行使가 있어야 實効的 지배를 하는 것으로 될 것인가는 몹시 애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同列島에 대한 중국의 實効的 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中國領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은 無主地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와 같은 면에서 論爭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尖閣列島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日·中 간의 분쟁에 있어 또 하나看過할 수 없는 것은 일본에 의한 이른바 先占이 淸日戰爭의 渦中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閣議決定에 의해 同列島를 영토로 편입한 明治 28년 1월 14일이라는 시기는 淸日戰爭에서 일본의 승리가 이미 確定的인 것으로 되고 講和에 대한 豫備交渉이 바야흐로 시작되려는 때였다. 뿐만 아니라 台灣을 일본에 割讓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列國의 양해가 이루어진 때이기도 했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그러한 시기에 尖閣列島의 沖繩縣 편입을 했다는 것은 事理上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日·中 간에 同列島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일본 측은 先占時에는 沈黙한 중국 측의 태도를 들고 나오기도 했으나 이때는 淸日戰爭 중이었으며 淸國 측의 敗色이 확정된 시기이기도 했었다. 그리하여 청국 측으로서는 台灣마저 상실하는 상황 가운데서 당시로 보아서는 하잘 것 없는 無主地인 尖閣列島의 귀속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때를 이용하여 그것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일본의 이

른바 先占에 대해 항의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을 막아 놓고 소리 지르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尖閣列島가 본래부터 中国領이었다고 할 때 일본의 입장은 몹시 불리하게 된다. 그것이 台湾의 附屬島嶼라고 보는 경우 淸日講和條約 第2條는 台湾 및 그 附屬島嶼를 일본에 割讓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次大戰 後 일본이 台湾을 포기한 결과 尖閣列島도 또한 샌프란시스코平和條約 및 華日平和條約에 의해 포기한 것으로 된다.

다른 한편 그것을 台湾의 附屬島嶼라고 보지 않는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카이로宣言에서는 淸日戰爭의 결과 일본이 淸國으로부터 盜取한 지역을 일본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시 동일한 내용을 再現하고 있는 포쓰담宣言을 일본이 수락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한 포쓰담宣言을 이어 받은 샌프란시스코平和條約에도 서명하고 있다.

### 三. 中·蘇 간의 領土紛爭

1978년 2월 24일 소련 最高會議幹部會는 毛沢東이 죽은 후 처음 열리는 중공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代)의 常任委員會에 서한을 보내어 쌍방의 非正常 관계에 중지부를 찍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 「相互關係의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을 서로 발표함과 동시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高位代表者 회의를 모스크바나 北京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공 外交部는 3월 9일 동 제안을 거부하는 覚書를 중공 駐在 소련 大使館에 보내면서 그러한 행위는 中·蘇 양국의 인민과 전세계의 인민을 기만할 뿐이며 소련이 진실로 양국 관계의 改善을 희망한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實際行動을 취하라고 응수했다.

중공은 이어 소련이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1969년 9월 11일의 周恩來·코시긴會談의 諒解事項에 의거하여 境界線의 現狀維持, 무력충돌의 방지, 분쟁지역으로부터 쌍방 군사력의 철수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이어 國境問題 해결의 交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그들은 蒙古人民共和國의 中·蘇 國境線으로부터의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고 60年代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添加했다.

그러자 소련은 3월 20일 타스通信을 통해 중공이 수락될 수 없는 조건을 되풀이할 뿐이며 소련에 대한 非友好的 노선을 계속한

다고 비난하고 이에 앞서 3월 26일 人民日報도 소련은 中·蘇 관계의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무력위협과 顛覆活動을 계속할 뿐이라고 하고 동시에 周恩来·코시긴會談의 諒解事項을 이행하라고 응수함으로써 中·蘇 관계는 毛沢東 死後 華国峰 체제하에서도 여전히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4월 1일 프라우다紙는 「現實과 虛構—蘇·中 국경조정문제에 붙여」라는 長文의 編集部 논문을 발표하여 1964년 이래의 中·蘇 国境交渉의 경과, 특히 1969년의 周恩来·코시긴會談과 그에 이은 일련의 中·蘇 절충의 내용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에 의하면

1969년 9월 11일의 周恩来·코시긴會談 後 中·蘇 간에는 몇번에 걸친 서한의 교환이 있는 듯 하다. 먼저 周恩来·코시긴會談에서는 宣言·声明·統一議事錄 등 文書類는 일체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報道用的 잘막한 발표문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이것이 중공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의 공식적 문서 교환에 의해 大使級 관계가 부활, 양국 무역의 확대·국경에서의 무력충돌의 방지·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 것 같다. 그리하여 이 문서교환의 과정에서 중공 측이 지금 中·蘇 양국 수상의 諒解事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

즉 1969년 9월 18일부의 문서에서 중공은, 中蘇 국경문제는 평화적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그 해결까지 쌍방은 국경의 정세를 정상화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 조치를 강구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이 임시적 조치를 5개 항목으로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서 <紛爭地域의 存在>를 인정할 것, 이 지역에서의 軍事力の 接觸을 종식할 것, 이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의 실시 방법을 결정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1969년 9월 26일부의 문서에서 ① 蘇·中 국경경비대 간의 정상관계의 유지와 国境의 現状確保 ② 모든 국경문제의 협의에 의한 점토제도의 준수 ③ 경제활동면에서의 양국 국경지역 주민의 利益의 고려 ④ 국경에서 상대방에 반대하는 선전( 拡声器의 이용을 포함)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으나 중공측이 제안하는 <紛爭地域> 문제를 포함하는 일련의 문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중공은 1969년 10월 6일부의 문서에서 다시 <紛爭地域> 문제를 포함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를 것을 희망했다고 소련은 주장하였다.

周恩来·코시긴會談과 그에 뒤이은 문서의 교환에서 中·蘇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北京에서 열린 中·蘇 国境交渉에서 <紛爭地域> 문제가 주요한 争点의 하나가 되었음은 확실하다. 다음에서는 中·蘇 국경문제의 發生經緯에 대해 되돌아 보고 <紛爭地域>이란 어디인가 그리고 中·蘇 交渉에서의 争点은 무엇인가에 대해 밝혀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交渉에서의 争点은 무엇인가? 첫째는 현재의 中·蘇

국경을 규정하는 일련의 조약이 不平等條約인가 어떤가의 問題이다.

중공은 현재의 中·蘇 국경을 규정하는 愛琿·北京·伊寧 등의 諸條約은 19세기의 50年代에서 西側의 帝國主義 諸國과 結탁하여 中國분할의 侵略政策을 추진한 帝政 러시아가 中國에 강요한 不平等條約이며 이들 諸條約에 의해 러시아는 中國으로부터 15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奪取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이에 대해 소련은 1963년의 단제에서는 이들 조약은 공통적 동의에 의거하여 양국의 커다란 영구적인 상호 우호를 위해 체결되었다고 하여 불평등 조약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이들 諸條約의 영토문제에 관한 규정은 지금도 전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9)

둘째는 다만스키島를 비롯하여 우수리(烏蘇里)江과 아무우르江(黑龍江)에 있는 여러 섬들이 中·蘇 어느 쪽에 속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소련은 우수리江을 양국의 국경으로 한다는 것은 1860년의 北京條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경계선은 1861년에 합의를 본 동 조약의 附屬地圖에 의해 확정되어 다만스키島 지구에서는 이 선은 直接 우수리江의 中國 측의 연안에 따라 그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공은 소련이 말하는 附屬地圖는, 1861년에 경계를 측량하기 전에 帝國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며 당시 측량·測定된 것은 興凱湖(항가湖) 이남의 陸上 경계 뿐이었으며 우수리江과 아무루江의 水上 경계는 測定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공인된 국제법의 기준에 의하면 항행할 수 있는 國境河川은

주요 항로의 中央線을 경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珍宝島는 中共領이라고 주장한다. 즉 결정된 것은 우수리江과 아무르江을 国境으로 한다는 것 만이며 이들 江의 가운데 있는 개개의 섬들의 귀속은 미정이기 때문에 주요 항로의 中央線을 양국의 경계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논거에 의해 卡脖子島나 七里沁島 등도 中共領이 되게 된다.

세째로 中·蘇 간에 <領土紛爭>이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이다.

중국은 1924년의 中·蘇 協定에서 帝政러시아와 중국이 맺은 모든 條約類는 폐기되며 국경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이 조약을 체결한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中·蘇간의 경계문제는 아직도 懸案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련은 국경문제에 관한 조약은 不平等條約은 아니며 폐기되어야 할 조약 중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中·蘇 간에는 영토분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이 中·蘇 간의 주요한 争点인데 그렇다면 어느 편의 주장이 옳을 것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1917년 11월의 소비에트 政權의 발족에서 1924년의 中蘇 国交正常化에 이르는 과정을 되돌아 보고 이 가운데서 국경문제가 어떻게 取扱되었던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917년 소비에트 政權은 발족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 정부에 대해 1896년의 조약과 1901년의 北京議定書 및 1907년에서 1916년까지의 사이에 帝政러시아가 일본과 맺은 모든 협정을 폐



기하는 것에 대해 交渉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문제에 대한 交渉은 1917년 11월에 시작되어 1918년 3월까지 계속되었으나 중국 측이 聯合國의 壓力에 의해 소비에트 政權과의 接觸을 끊고 러시아 駐在 公使를 소환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후 1919년 7월 25일 外務人民委員 代理 카라한은 中國 人民과 南北 中國政府에의 호소를 발표하고 정식 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유명한 第1次 카라한 宣言이다.

뒤 이어 다음 1920년 9월 27일 다시 카라한은 모스크바 방문 중의 중국 軍事外交使節團長 張士麟장군에 대해 소비에트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을 手交했다. 이것이 제 2차 카라한宣言이다. 이들 선언을 기초로 交渉한 결과 1924년 5월 31일 카라한과 顧外交 部長과의 사이에 <中蘇懸案解決 大綱에 대한 協定>이 조인되어 같은 날 發効함으로써 양국의 國交는 정상화된 것이다.

이들 諸文書 가운데서 영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제 1차 카라한宣言에서는 소비에트 정부는 중국에서 滿洲나 기타 지방을 뺀 帝政 러시아 정부의 征服地를 포기했다고 발표하고 이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諸民族이 어떤 나라에 속하고 어떤 統治形態를 수립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케 하자고 하고 있다.

또한 제 2차 카라한宣言에서는 소비에트 정부는 旧러시아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占拠한 모든 중국 영토와 중국 내의 모든 러시아인 租界를 포기하고 帝政정부와 러시아 부르주아지이가 약탈한 모든 것을 無償으로 영구히 중국에

반환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特別協定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24년의 中·蘇協定에서는 양국 정부는 동 협정 조인 후 1개월 이내에 열릴 회의에서 중국 정부와 帝政러시아 정부가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협정·의정서·제약 등을 폐기하고 이에 代置하여 平等·互惠·公正의 원칙 및 제 1차·제 2차 카라한 宣言의 정신에 의거하여 새로운 조약·협정등을 체결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제 7조에서 앞에 말한 회의에서 국경을 다시 점검하고 그 점검까지는 현존의 경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더구나 이 회의에서 작성되는 細目協定은 늦어도 同會議 開會 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1924년의 國文正常化의 단제에서 소련과 중국은 지난 날 帝政時代에 맺어진 모든 條約類를 폐기하여 새로운 조약으로 代置하고 국경은 再點檢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열린 것은 1925년 8월 26일의 일이며 예정 보다 1년 이상 늦어졌다. 회의에서는 6개의 小委員會가 조직되었으나 국경문제를 검토하고 國境劃定小委員會는 실질적으로는 활동하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 회의와 小委員會는 1926년 6월의 夏季休會에 들어간 이후에는 재개되지 않아 국경문제에 관한 새로운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1930年代 滿洲國의 設立後는 中·蘇 국경문제는 日·滿·蘇 3국간의 국경문제로 화했다.

1949년 10월의 이른바 中華人民共和國의 발족과 더불어 中·蘇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돌입한다. 양국은 1950년 2월에 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을 체결하여 일본에 대한 共同防衛와 양국의 善隣·友好 관계의 강화를 약속했다. (10)

그런데 이 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國家主權과 領土保全의 상호 존중을 記歌했을 뿐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었다.

中·蘇 국경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前述한 것 처럼 1960年代 이후인데 거기에서의 소련의 입장은 1930年代의 日·滿·蘇 국경분쟁 때와 같다. 소련은 中·蘇 국경은 이미 帝政 러시아와 淸國 사이의 일련의 조약들에 의해 확정된 것이며 불명확한 부분만을 확실히 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때 소련은 중공의 요구를 받아 드려 일정한 양보를 할 용의가 있으나 국경지역을 <紛爭地域>으로 하여 영토문제를 係爭問題로 하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련은 왜 그처럼 강경히 <紛爭地域>이 존재한다는 데 반대하고 있을까? 그것은 중공이 소련에 대해 <紛爭地域>의 존재를 인정케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① 현재의 中·蘇 국경을 규정하고 있는 現行의 中·露 諸條約의 有効性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② 中·蘇 간에는 조약적 문서에 의해 규정된 통일된 연속적인 국경선이 실제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看做한다는 것 ③ 국경획정 문제를 심의할 때까지 상당 부분의 소련領에 대해

권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④ 이른바 <紛爭地域>으로 부터 소련의 武裝力量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할 염려가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국경선 부분이 사실상 개방되고 그 결과 중공으로서 이 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소련은 <紛爭地域>을 인정함으로써 中·露 諸條約의 有効性이 문제되어 中·蘇 국경 전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소련의 對中共 불신은 심각하다.

이것 등과 관련하여 소련은 중공의 <경계의 現狀維持> 제안에도 경제적이다. 이 제안은 1969년 10월 7일 周恩來·코시긴會談의 합의범위를 넘어 중공 정부에 의해 補足的으로 제기된 것인 듯 하다. 이에 대해 소련은 특별한 異議는 제기하지 않고 1970년 2월 11일 現狀維持協定의 소련案을 제출했다. 그 후 이 소련案에 대해서는 중공 측의 의견을 넣어 몇번인가의 수정이 이루어진 듯 하나 기본적으로는 中·蘇 양국 모두 경계의 現狀維持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것은 중공이 現狀維持와 紛爭地域의 승인과를 결부하여 紛爭地域의 승인없이 現狀維持協定은 체결되지 않고 現狀維持協定의 체결없이는 경계선의 劃定에 들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中·蘇 국경분쟁의 뿌리는 깊고 中·蘇는 서로 큰 불신감을 갖고 있다. 그 위에 중공 측의 요구는 근년에 이르러 더욱 에스칼레이트되어 蒙古人民共和國과 中·蘇 경계선

에서 군대의 철수마저 요구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좁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다.

현재의 中·蘇 국경을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조약이 러시아의 帝國主義的 아시아 진출의 결과이며 당시의 力關係로 해서 淸國에 불리한 不平等條約이었음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 지역의 중공에 의한 領有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토지는 본래 터키系, 몽고系의 遊牧民族이나 퉁구스系의 狩獵民族의 고향이며 중국이 그것을 얻은 것도 淸朝 最盛期の 군사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中·蘇 양국 공히 자기의 영토주장의 근거를 역사 가운데서 구할 수는 없다. 역사를 소급하면 그 지방은 中·蘇 어느 쪽의 것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現狀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 四. 韓 · 日 간의 領土紛爭

1977년 2월 23일 일본 衆議院 豫算委員會에서 당시 福田赴夫 首相은 일본이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하되 국제해협에 대해서는 종래의 3해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獨島의 경우는 그것이 일본 固有의 영토이기는 하나 문제의 미묘성 때문에 그 곳에 대한 영해 12해리의 적용은 상황의 추이에 따라 생각하겠다고 함으로써 獨島 주변 해역에 대한 영해 12해리의 확대적용은 당분간 보류할 뜻을 示唆했다.

이 날 회의에서 公明黨의 한 의원은 獨島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일본 정부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鳩山威一郎 外相에게 질문했다 한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의 施政下에 있는 영역에서 美·日 중의 어느 일방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美·日 양국은 그것을 자체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각자의 憲法上的 규정과 절차에 따라 共同危險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1960년의 美日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제 5 조를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鳩山外相은 獨島는 安保上的 문제로서 대처하지 않을 것이며 北方 4個島嶼와 더불어 일본의 영토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일본의 施政下에 있는 領域> (territories under administration of Japan)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한다.

여기에서 北方 4個島嶼라 함은 北海道와 캄차카半島를 잇는

쿠릴(千島)列島 중 北海道 다음에 있는 네개의 섬 즉 하보마이(齒舞)·시코탄(色丹)·에토로후(択捉)·구나시리(国後)를 말하거니와 이것은 본래 일본의 영토였으나 2차대전 중 소련군이 점령하여 戰後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아 日·蘇 간에 분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前記한 일본 衆議院 豫算委員會에서 農林相 鈴木善幸은 独島가 北方 4개島嶼와 더불어 일본 固有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국 또는 소련과 분쟁이 있더라도 영해 12해리를 적용시키겠다고 증언했다. 鈴木農林相은 소련이 대규모 漁船團을 일본 근해에 파견하여 濫獲을 일삼자 북부 일본의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外務省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영해를 12해리로 확정케 한 張本人이다.

그는 처음 영해확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던 福田首相에 대해서 마저 1977년 7월 3일에 있을 參議院 선거에서의 得票를 내세워 그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을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1977년 2월 8일에는 일본 読売新聞社 소속의 비행기가 独島 領空을 침범했으며 2월 19일에는 福岡毎日放送 소속 헬리콥터 1대가 역시 独島 領空에 들어와 약 20분 동안 경비대 숙소 등 섬의 곳곳을 撮影해 간 일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월 16일 및 2월 21일 엄중항의를 하고 특히 2월 21일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強硬姿勢를 보이기도 했으나 일본은 2월 16일자 항의에 대해 獨島上空 비행을 한국의 영공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회답을 보내 오는 등 이에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2월 16일에는 大阪에 있는 駐오오사가 한국 總領事館 앞에서 일본의 極右団体인 日本皇道青年聯盟 會員 5~6명이 약 한시간 동안 웨이건車 뒤에 태극기를 끌고 다니면서 「獨島는 일본 영토이다. 한국인은 물러 가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모독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기는 했으나 언제 再燃될지도 모를 韓·日 간의 불씨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獨島는 東徑 131도 52분, 北緯 37도 14분에 위치하는 우리나라 最東端의 섬이며 울릉도로부터 92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 南端에는 濟州島가 있고 그 外側에 加波島가 있으며 다시 그 外側 즉 우리나라 最南端에는 馬羅島가 있다. 行政区域上 이 두 섬은 濟州道南濟州郡大靜面加波島 및 馬羅島로 되어 있다. 南濟州郡大靜面慕瑟浦港에서 남쪽으로 5.5킬로미터 떨어진 加波島는 면적 0.84平方킬로미터이며 180家口, 850명의 주민이, 11킬로미터 떨어진 馬羅島는 면적 0.3平方킬로미터이며 26家口, 116명의 주민이 어업을 主業으로 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 섬에는 1867년(高宗 6년) 濟州島에 큰 凶年이 들자 농민 李氏 玄氏 등 5家口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이주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한다.



우리나라 最西端에는 小黒山島와 紅島가 있다. 우리나라 南西沿岸 諸島の 最南西端에 있는 小黒山島는 海南角의 西方 약 130킬로미터에 있으며 北西 南東의 길이는 약 6.5킬로미터이고 幅은 약 2킬로미터이다. 그리고 주위에 바위로 된 작은 섬이 散在하고 있고 火里 등 3개의 부락이 있다. 일명 梅花島라고도 불리우는 紅島는 大黒山群島の 西方 약 18킬로미터에 있는 길이 약 5.5킬로미터, 幅 약 1.5킬로미터의 남북으로 긴 험한 벼랑의 섬으로서 남북에 산이 있고 잡초가 무성하다.

行政区域上 慶尙北道 蔚寧道南面道洞山 67번지인 獨島는 동쪽에 東島, 서쪽에 西島가 있으며 절벽에는 <韓國領>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고 蔚寧道 警察署 獨島警備隊가 경비하고 있을 뿐 주민도 없고 나무도 없으며 또한 食水도 충분치 않은 외딴 섬이다.

그러나 이 섬은 막중한 戰略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올라더보 스토크에 基地를 둔 소련의 極東艦隊 소속의 艦船이 東支那海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섬 주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섬은 지브랄타르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1977년 4월 20일 下午 沖繩東南 1,000킬로미터의 일본 근해에서는 미사일 積載艦을 포함한 4隻의 소련함대와 8台的 空軍機가 참가한 海空合同 機動訓練이 개시되었다. 이 소련 機動訓練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自衛隊는 3개 空軍基地에서 F104 및 F86 등 32台的 전투기를 출동시키는 한편 對潛水艦 巡察艇 1隻과 구축함 1隻을 소련의 機動訓練 海역으로 파견했다고 일본 防

衛庁이 이날 밝혔다.

일본 防衛庁에 의하면 機動訓練에 참가한 소련 함대는 클레스타 2型 미사일 積載 巡洋艦(6,000톤) 1隻과 카신型 미사일積載 驅逐艦 2隻(4,300톤과 3,700톤) 및 油槽艦 1隻(13,000톤)이며 이들 함대는 1977년 5월 17일 對馬島와 일본 본토 사이의 對馬海峽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防衛庁 代辯人은 8台的 소련 對潛水艦機들이 이날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機動訓練에 가담했다고 말했는데 軍事消息通들은 對潛水艦機의 出現으로 보아 소련 잠수함도 訓練에 참여한 듯 하다고 전했다.

對馬海峽을 통과한 소련 함대는 올라디보스토끄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그들은 獨島 근해를 통과했을 것이 틀림없다.

소련 해군의 艦艇保有量은 약 290만톤을 가진 美海軍에 비해 아직 10% 이상이나 적다. 美海軍의 경우는 총톤수의 약 40%를 航空母艦이 차지하나 소련 해군에는 항공모함이 거의 없다.

그러나 다른 戰鬥艦艇의 수는 소련 쪽이 훨씬 우세하다. 또한 함정의 平均 연령도 소련이 훨씬 젊다.

이렇게 강대한 소련 해군은 北氷洋·太平洋·발틱海·黑海의 네艦隊가 地中海·印度洋의 두 소함대로 편성되고 있는데 그 중 太平洋(極東)艦隊는 北氷洋艦隊 다음으로 強力하다. 그것은 600隻 이상의 함정을 갖고 있으므로 소련 全海軍戰力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난 1975년에 나온 제인海軍年鑑은 이 함대가 巡洋艦 3隻,

驅逐艦 22隻 정도를 갖는다고 했는데 1976년 미국의 國際戰略 研究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순양함은 8隻, 구축함은 28隻으로 늘어나고 原子力 잠수함도 24隻에서 31隻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순양함 중에는 소련이 자랑하는 艦對艦 미사일, 對空 미사일의 장비를 갖춘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1967년 10월 아랍 聯合軍의 小型 高速艇이 이스라엘 해군의 자랑인 驅逐艦 에이라트호를 불과 3發의 미사일로써 격침시킨 일이 있는데 지금 極東艦隊에 장비된 것은 그 때의 미사일 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이다. 이밖에도 極東艦隊에는 通常型 잠수함이 80隻 이상이나 배치되어 있다.

이렇듯 強力한 極東艦隊는 항상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津輕海峽에 대해서는 年間 50隻의 함정이, 宗谷海峽의 경우는 100隻 이상의 함정이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의 함정이 往來하는 곳은 玄海灘이며 이 곳에서는 年間 150隻 이상의 함정이 통과하고 있다 한다.

여기엔 구축함 1~2隻이 常駐하다 싶이 하고 있고 그 목적은 東海上空을 南下하는 항공기나 原子力 잠수함과 연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을 가는 잠수함이 얼마나 이들 해협을 통과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와 같이 소련이 太平洋 方面에 注力하고 있는 것은 美第7艦隊를 견제하기 위해서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機動訓練은 200해리 漁業專管水域 문제와 그리고 1976年 9月 「빅토르 I. 벨렌코」中尉가 몰고 온

미그 25 를 일본이 분석하여 그 秘密을 미국에 넘겨 준 사건과 관련하여 소련이 청구하고 있는 8,000万弗의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일본에게 压力을 가하기 위해 시작된 것 같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문제되는 것이 独島の 戰略的 가치인 바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소련의 極東(太平洋)艦隊가 東支那海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独島 주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想起해야 하리라고 본다.

独島の 領有權을 둘러싸고 韓·日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은 제 1차 韓日會談이 그 前半會議를 끝마치고 休會에 들어간 1952년 1월의 일이었다. 韓日 양국은 1951년 10월 21일부터 東京에서 제 1차 韓日會談을 가졌는데 이 회의가 年末年始의 休會에 들어간 후인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平和線을 선포하자 일본은 1월 24일 平和線 자체에 대해 도전 했을 뿐 아니라 対日 平和條約의 解釈上 「일본 영토로 인정된 島根県竹島를 李라인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 섬에 대한 한국의 主權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바이다」라고 하는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동년 1월 28일자 駐日 韓國代表部에 보내은 覚書에서 일본 영토인 이들 섬에 대한 한국의 여하한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2월 12일자 駐日 韓國代表部 覚書를 통해 이것을 一蹴함으로써 양국 간에는 분쟁이 발생했던 것이다.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独島는 일본의 固有한 영토라는 것이다.

이것은 独島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였다는 뜻이다. 동시에 그들은 1905년 2월 25일 이른바 島根県 公示 제 40호로써 独島를 島根県에 편입하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先占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 측 주장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独島가 만일 일본의 固有한 영토였다면 先占이 필요 없을 것이며 先占을 했다면 그 이전의 独島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두가지 주장 중 어느 하나만을 택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일본이 어느 주장을 택하더라도 근거없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일본이 역사적으로 独島가 자기들의 영토였다고 주장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三國史記에 의하면 独島는 울릉도와 더불어 古來로 于山國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新羅 제 22대 智証王 13년(西紀 512년) 異斯夫가 이를 정복하여 新羅의 영토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高麗時代에는 本島를 울릉도라고 부르고 独島를 于山島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다시 李朝時代에 내려 와서는 正宗 18年(西紀 1794年)경부터 独島에 가지(물개)가 棲息하고 있는 관계로 可支島라고 불리우다가 光武 10년(西紀 1906년)경부터 独島라고 불리워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 측 史料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간혹 空島政策을 써 일시적으로 사람의 거주를 금한 일이 있긴 했으나 일관성있게 우리 영토의 일부로 看做하고 또한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일본이 先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先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無主地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 처럼 獨島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기 때문에 先占이란 語不成說이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그것이 한국의 영토였다면 1905년 2월 22일 이른바 島根県 公示 제 40호로써 그것을 島根県에 편입했을 때 왜 沈黙을 지켰는가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想起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우리에게 「大韓帝國 정부는 大日本帝國 정부를 확신하고 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받아 드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韓日議定書를 강요하고 동년 8월 22일에는 제 1차 韓日協約을 강제하여 우리의 外交權 및 財政權을 박탈했으며 이 해 일어난 露日戰爭으로 1905년 2월에는 우리나라에 日本軍이 上陸해 있었다. 다시 1905년 11월 17일에는 제 2차 韓日協約 즉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어 우리나라는 일본의 被保護國으로 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일본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한국 자체가 일본에게 併呑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1개 島嶼의 탈취에 항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被保護國은 보호국을 통해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異議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본 外務省이 바로 일본 外務省에 異議를 제기하는 셈이 된다.

특히 일본은 1904년 8월 22일의 제 1차 韓日協約에서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이 추천하는 外交顧問과 財政顧問을 각각 1명씩 두게 하고 외교 및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그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外交顧問에는 親日的 미국인 스티븐스가 임명되고 財政顧問에는 일본인 目賀田種太郎이 임명되었다. 입이 막히고 팔이 묶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항의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항의를 하려 해도 길이 없었다.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조). 여기에서 1910년 8월 22일의 조약이란 이른바 韓日合併條約을 말하는데 이것과 그 이전의 양국 간의 조약 및 협정은 모두 이미 무효라는 것이 상기 조약의 뜻이다.

그런데 이 조약의 정신상 이미 무효인 것은 그러한 조약이나 협정 뿐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태까지 包含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설사 獨島에 대한 先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도 同行爲가 이미 무효가 되었음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 五. 日・蘇 간의 領土紛爭

日・蘇 간의 영토분쟁의 核心은 이른바 北方 4個島嶼 문제이다. 여기에서 北方 4個島嶼라 함은 앞서 본 것처럼 北海道와 캄차카 半島를 잇는 쿠릴(千島)列島 중 北海道 다음에 있는 네개의 섬 즉 하보마이(齒舞)・시코탄(色丹)・에또로후(択捉)・구나시리(国後)를 말하거나 이것을 본래 일본의 영토였으나 2차대전 중 소련군이 점령하여 戰後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아 日・蘇 간에 분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에 관한 現狀을 알기 위해서는 戰後 日・蘇 관계의 趨勢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戰後 日・蘇 관계는, 1956년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鳩山首相과 불가닌首相이 日・蘇 共同宣言에 조인함으로써 2차대전의 결과 발생한 양국 간의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때 国交正常化를 위해 日・蘇 平和條約의 交渉을 런던과 모스크바에서 했으나 영토문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양국은 먼저 外交關係를 회복하고 후에 평화조약 交渉을 계속한다는 선으로 共同宣言에 조인했던 것이다.

양국이 평등한 파트너로서 나가기 된 것은 1964년 5월의 미코얀의 訪日이 계기가 되었다. 이 때 소련 最高會議議員團을 인솔하고 일본을 방문한 미코얀 第1副首相은 일본의 高度經濟成長에 경악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후 그는 对日外交 적극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10 월에 는 田中首相이 소련을 방문했다. 鳩山首相의 訪소 이래 17 년만에 소련을 방문한 田中首相은 브레즈네프 書記長과의 首腦 會談에서 平和條約 交渉을 행하여 그 결과 日·蘇 兩首腦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日·蘇 쌍방은 2차대전시 부터의 미해결의 諸問題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함이 양국 간의 진정한 善隣關係의 확립에 기여함을 인식」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 때 일본 측이 미해결의 諸問題 중에는 영토문제가 포함된다고 한데 대해 브레즈네프 書記長도 그렇다고 했다 한다.

그러던 것이 日·中共 國交正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日·蘇 관계는 급격히 冷却化되었다. 이것은 日·中共 평화조약에 있어서의 이른바 霸權條項을 둘러싸고 결정적인 것으로 되었는데 그 결과 1975년 10월 그로미코外相은 소련 共産黨理論誌 <코무니스트>에 卷頭論文을 寄稿하여 일본의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근거없는 北方領土 반환요구에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경한 論陣을 펴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 2월 브레즈네프 書記長도 소련共産黨 제 25차 大會에서 「평화적 해결의 諸問題에 관련하여 일본에는 때때로 외부로부터의 直接的 교사 아래 소련에 대한 근거없는 불법적인 요구를 제기하려는 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지금 北方 4개島嶼의 반환 문제는 日暮遙遠한 느낌이 있고 소련으로서는 일본과의 사이에 영토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마저 인정치 않고 있는 형편이다.

## 註

- (1) 奥原敏雄 「尖閣列島領有權の根拠」 中央公論 昭和53年(1978年)  
7月号 68頁 참조.
- (2) 同書 74~75頁 참조.
- (3) Oppenheim-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8th ed.,  
1955), Vol.I, p.555.
- (4) Keller, Lissitzyn and Mann, Creation of Rights of So-  
vereignty Through Symbolic Act, 1400-1800(1938), pp.  
148-149.  
See also von der Heydte, "Discovery, Symbolic Annex-  
ation and Virtual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Law,"  
2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1935), pp.  
448 et seq.
- (5) Herbert W. Briggs, The Law of Nations, Cases, Documents,  
and Notes(2nd ed., 1952), p.241.
- (6) P.C.I.J. Publications, Series A/B, No.53(1933), pp.  
50-51.
- (7) Briggs, op.cit., p.249.
- (8) 中共 학자들의 不平等條約에 대한 해석은 興味롭다. 1950  
년 5월 12일자의 光明日報에는 「商約和貿易協定有什麼分別?」  
이라는 題下の 王翬望의 論文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不平等

外  
2

그 결과 1952년 12월에 체결된 日·蘇 通商條約과 日·蘇 貿易支払協定을 기초로 1965년에는 日·蘇 經濟合同委員會가 설치되고 1966년에는 5개년의 長期貿易協定이 조인되는 등 차례로 경제교류 확대의 파이프가 부설되었다. 이 사이 무역액은 1958년의 年間 4000万弗에서 1971년에는 8億7300万弗로 증가, 소련의 對西方諸國 무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國別順位는 1966년에는 영국과 핀란드 다음으로 3위에서 1967년에는 1위, 1968년과 1969년의 양년에는 영국에 한번 뒤졌으나 1970년에는 다시 1위로 되었다. 이러한 日·蘇 경제관계의 급속한 伸張에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日·蘇 경제합동 위원회에서 토의된 시베리아 開發協力이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서의 비약적 발전과 병행하여 정치적 면에서의 교류도刮目할만한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가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中·蘇 관계의 惡化라는 요인이 있었다. 周知하는 것 처럼 1960年代 後半 중공의 文化大革命에서 시작하여 1969년 3월의 다만스키島에서의 무력충돌 사건으로 中·蘇 관계는 급템포로 惡化했다. 그 후 1969년 後半에서 1970년대 前半에 걸쳐 소련은 브란트 西獨政權의 이른바 東方政策을 맞아 獨蘇武力不行 使條約의 체결을 중심으로 對西方 接近政策에 拍車를 가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日·蘇 간에서는 먼저 1966년 1월 椎名外相이 日·蘇 國交回復 후 外相으로서는 처음

訪소하고 뒤이어 동년 7월 그로미코 外相이 처음으로 訪日을 했다. 이 잇달은 양국 外相의 상호방문에서 그 때마다 일본은 齒舞・色丹・国後・択捉의 반환을 요구하고 공동성명에서 <領土問題>의 字句를 넣으려고 했으나 소련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失敗했다.

그 후 1967년 7월 제 1차 日・蘇 關係定期協議를 위해 이루어진 三木外相의 訪소를 전후해서 소련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그리하여 1969년 9월의 愛知外相의 訪소 때 코시긴首相은 「영토문제는 中・蘇 문제도 있고 하니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

1971년 4월 中旬부터 시작된 美・中の 평평外交와 동년 7월 닉슨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중공 방문계획은 日・蘇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對中, 對美 外交戰略의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련은 1971년 11월 소련 共産党中央委員會 총회에서 아시아集團安保 構想을 재천명하고 인도와 平和友好協力條約을 체결했으며 방글라데시 獨立을 지원하고 또한 ASEAN의 中立化선언을 지지했다. 이것은 對美 接近에 의해 美・中・蘇 3極體制에 있어서의 力關係에 유리한 高地를 차지한 중공에 대해 중공의 周辺諸國에 接近함으로써 對中共 封鎖를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日・蘇 간의 관계는 더욱 호전되었다. 그 결과 1972년 1월에는 그로미코外相이 일본을 방문하고 1973년

條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不平等條約은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그 형식과 규정은 평등하고 互惠的이나 사실상으로는 帝國主義者들에 의한 약소국에 대한 경제적 侵略에 알맞는 것에 불과한 조약을 말하고 또 하나의 부류는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똑 같이 侵略의 犧牲者의 일방적 의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侵略者의 여러가지 특권을 규정하는 조약을 말한다. 阿片戰爭으로부터 반동적인 國民黨 政權이 끝날 때까지 帝國主義者들과 중국 간에 체결된 여러 通商條約이 이러한 두가지 부류의 조약들의 집합이다. 미국과 장개석 간의 <中美通商航海條約>이 첫째 부류의 通商條約의 典型이다. 滿洲朝 및 軍閥時代에 체결된 領事裁判管轄權・領土租借・租界・關稅制限・国内河川에 있어서의 항행・철도의 건설・鈹業權・工場設立 등등을 규정한 그 밖의 不平等條約들은 둘째 부류의 通商條約의 典型이다.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이들 通商條約은 帝國主義者들의 군사적 위협하에 체결되었다」.

Jerome Alan Cohen and Hungdah Chiu, People's China and International Law: A Documentary Study(1974), Vol. II, p.1168.

- (9) 소련에서도 不平等條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지금 소련의 대표적인 국제법학자 퉁킨 교수에 의하면 「소비에트國家는 쓰아리즘의 植民地政策과 完全히 그리고 즉시 訣別했으며 植民地主義

的・侵略的・불평등한 성격을 가진 帝政러시아의 모든 조약을 廢棄했다」는 것이다. G.I.Tunkin,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William E. Butler(1974), p. 11.

소련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법 교과서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국제조약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諸國民의 交渉이나 또는 국제법 그 자체도 있을 수 없다..... 이 원칙은 UN憲章의 前文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이 원칙은 각국이 UN憲章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제 2 조 2항의 의미내용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조약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원칙은 무리하게 강제된 侵略的 또는 隸屬的인 조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그러한 조약은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한 조약을 부인함은 前記한 국제법원칙의 위반이라고 看做되어서는 안된다. 当事國의 평등을 기반으로 체결된 조약은 平等條約이나 다른 한 편 이러한 기본적 요건에 반한 조약은 不平等條約이다. 不平等條約은 법적 効力을 갖지 않는 것이나 그러나 平等條約은 屐수되지 않으면 안된다」.

安井 郁監修 岩淵節雄・長尾賢三編訳 シン連科学アカデミ-法律研究所 國際法 下卷 日本評論新社 昭和38年 280-281頁.

동 교과서는 다시 「당사국의 자유의사에 의한 意思表示, 平等

및 互惠가 국제조약의 기본적인 法原則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上掲書 279頁) 「不平等條約, 隸屬的 條約 등은 법적 効力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조약을 파기함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민주적인 現代國際法の 諸原則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上掲書 319頁).

(10) 上掲書 289-290頁 참조.

- ABSTRACT -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Charn Kiu Kim

The present thesis is to inquire into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namely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regard to the Dokto Island; between Japan and Soviet Russia involving four northern islands, Habomai, Shikotan, Kunashire, and Etorofu; between Japan and China regarding Sengaku Islands; and between China and Soviet Russia concerning border line.

Territorial disputes concerned have three characteristics. In the first place, they draw attention because they are territorial disputes. In modern times, no States can made any concession in territorial problem under the pressure of national sentiment. Especially so is it in developing countries. Most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under the domination of developed countries before the Second World War, therefore they have strong nationalism not to be able to abandon even a single part of their territory. The same is true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second place, territories under dispute are concerned with natural resources, marine or mineral. For example, around the Dokto Island there is a fishing ground plenty of marine resources, so the country which owns the Dokto Island shall be entitled to the fishery resources. Four northern islands disputed between Japan and Soviet Russia are not an exception. In 1976 Soviet Russia had proclaimed exclusive fishing zone extending 200 miles from the coast line, and in 1977 it demarcated sea boundary in which world famous fishing ground is involved.

Thirdly, islands under disputes are very important from the strategic point of view. The Dokto Island is located on the way of the Russian Pacific Fleet. The same is true in regard to the four northern islands presently occupied by the Soviet Russia. The country possessing those islands had great advantage in deployment of naval fleet.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which possess the islands can exert great pressure upon the other.